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FDA, 식품현대화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FDA, 식품현대화법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미국 식품현대화법, 단계적으로 시행 중”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식품현대화법, 단계적으로 시행 중

미국에서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 동물성 사료 제조과정에 있어 현대식 제조공정 규제를 통해 잠재적인 식품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 생산시설 관리감독, 식품의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의 책임을 식품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FDA 권한 역시 강화, 식품업체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리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미국 내 식품업체와 더불어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식품현대화법에 맞추어 시설 등록, 식품 안전 관련 관리감독에 관해 문서화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행령은 농식품 부문별로 총 7가지이며 시간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문 가운데에서도 식품에 관한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 따르면, 세부식품업체들은 식품 안전 예방과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s)에 대해 직원 교육, 훈련, 경험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직원 500명 이상 대형업체는 1년 후, 500명 미만 일반업체는 2년 후,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소형업체는 3년 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업체는 올해 9월 19일, 500명 미만 일반업체는 2017년 9월 19일,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소형업체는 2018년 9월 19일부터 규제를 적용 받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위한 식품안전계획서는 만들어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FDA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FDA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사고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시설에 검사를 나온 FDA 검사관이 문서화된 계획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설 위험도를 평가할 때 식품이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을 준수해 제조되었다는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를 서면고객보증서(written customer assurances)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관리 책임이 주어진다. 소형업체는 2018년 9월, 일반업체는 2019년 9월부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